

우주항공청 공고 제 2026-0026호

2026년도 Space-K BIG 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 공고

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「Space-K BIG 프로젝트 사업」 2026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6일

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

※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 게시 가능

1.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우주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연구센터로 지정·운영하여 우주 중점분야 기초원천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
- (사업내용) 우주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재 양성 및 관리계획 제시
- (지원분야) 우주 핵심임무 기반 4개 중점 분야

① 우주수송, ② 인공위성, ③ 우주과학탐사, ④ 우주임무보증

- ('26년 선정분야) 인공위성/우주임무보증 분야 중 1개 센터 선정

※ '25년 2개 분야(우주수송, 우주과학탐사) 선정 완료

- (수행주체) 대학(원)*(협업대학** 가능하며 협업대학 수 제한 없음)

*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고등교육기관,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원 등

** 협업대학: 학부 및 대학원 내 우주항공분야 학과나 전공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

2. 지원 내용

○ (선정규모) '26년도 선정 센터(1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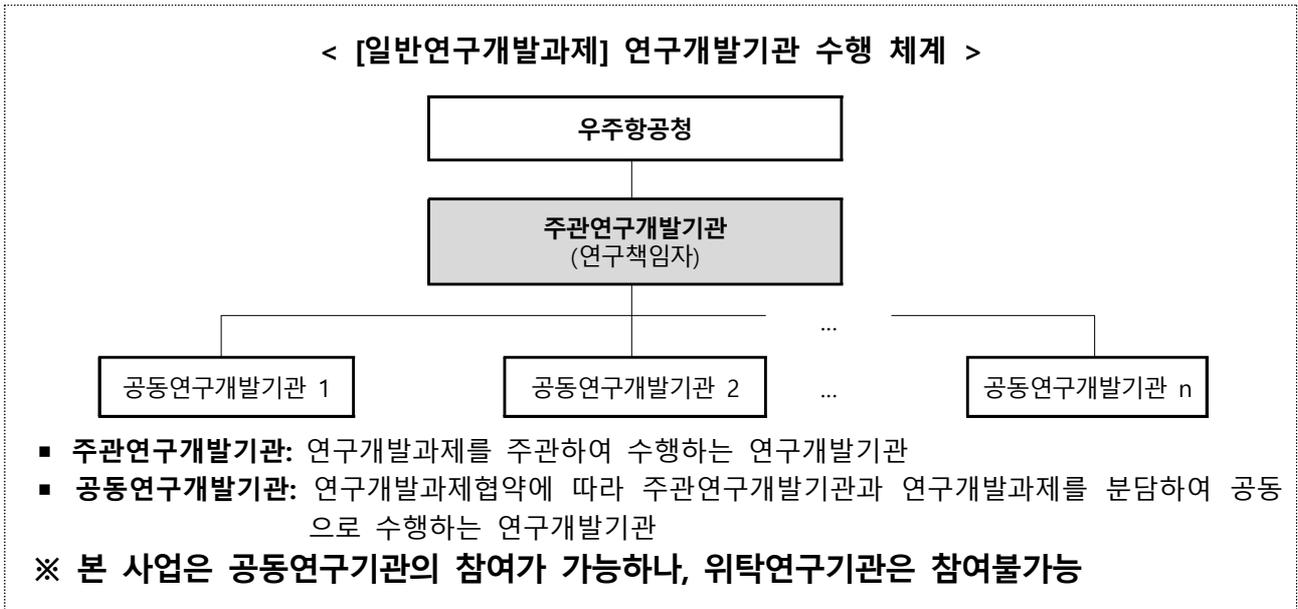
세부사업 (내역사업)	과제명	총 연구기간 ('26년 연구기간)	산정 과제수	총 연구비 (정부출연금)	비고
Space-K BIG 프로젝트 사업	2026년도 Space-K BIG 프로젝트	2026.4.~2030.12. ('26.4.~'26.12.)	1	5,700백만원	상세내용 붙임 RFP 참조

- 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/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
- ※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
- ※ 본 사업의 정산업무는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법인 위탁 수행 예정이며, 이에 따른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여야 함
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○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

- 일반형 추진체계



□ 신청자격

- 지원분야*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대학(원)**을 대상으로 지원(협업대학*** 참여가능하며 협업대학 수 제한없음)

* 지원분야: 인공위성/우주임무보증 중 1개 분야

**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고등교육기관,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원 등

*** 학부 및 대학원 내 우주항공분야 학과나 전공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
협업대학으로 참여시 우대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(정의)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
고등교육기관

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□ 신청 제한

- (참여제한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단,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
-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*의 사업참여자**는 중복지원 불가
 - * 우주항공청에서 추진중인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(R&D)의 미래우주교육센터
 - ** (주관, 공동, 위탁 모두 해당)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

- **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: 3책5공)**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
 - 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
 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'책',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'공', 그 외 참여연구원은 '공'
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
 - ※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(3책 5공)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선정 취소(협약해약) 사유에 해당
 - ※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,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

-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(주관/공동) 및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)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
- **(인건비 계상률*)**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**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***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 - 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=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/연 급여)
 - **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%를 초과한 경우

- **(연구기관 구성 제한)**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*으로 구성해야 함
 - 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 - 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
-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<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>

연구개발기관 구분	사례1	사례2	사례3	사례4
주관연구개발기관	A기관	A기관	A기관	A기관
공동연구개발기관1	B기관	A기관	B기관	B기관
공동연구개발기관2	C기관	B기관	B기관	A기관
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	가능	불가능	불가능	불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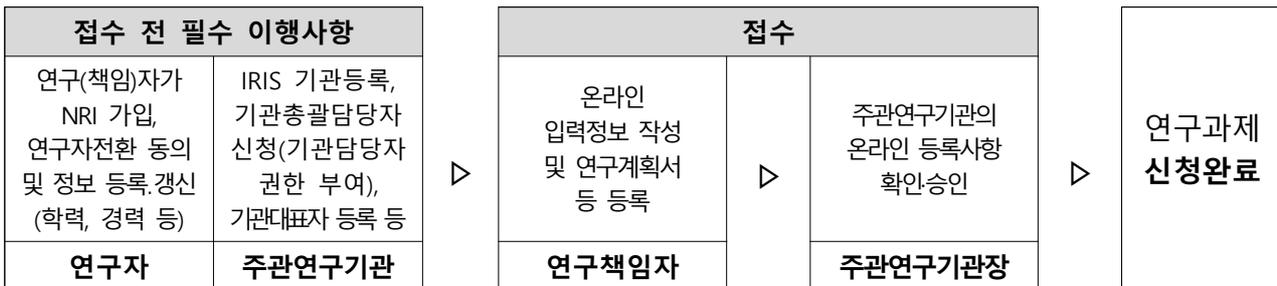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▶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[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](#))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-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,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참고>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
[별첨]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
-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, ③ NRI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의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**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,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
-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 또한 'IRIS 회원가입' 및 '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' 필수.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,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

- 1) 매뉴얼 : [별첨]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 - 2) 과제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'00대학교 산학협력단'이 아닌, "00대학교"로 신청요망
 - 3)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 -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,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- 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어, 접수마감까지 <00대학교>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◆ 관련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

□ 제출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(HWP)
- 기타증빙 각 1부(PDF)

<제출서류 목록>

구분		항목명
연구개발 계획서	필수제출 서류	연구개발계획서
		첨부1.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*
		첨부2.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
	선택제출 서류	첨부3. [협약용]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·보완 대비표
		첨부4. (해당 시)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(3천만원이상~1억원 미만)
		첨부5. [협약용] 안전관리 계획 등
기타증빙	필수제출 서류	첨부6. [협약용, 해당 시]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
		1.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/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
* <http://ntis.go.kr>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(2022~2026)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,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
 ※ 양식에서 [협약용]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

제안서 보완요구

-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,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,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-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,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

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

-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우주항공청의 재산으로 귀속되며,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- 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- 목차 1.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~ 5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30~50페이지 내외 작성

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2026. 3. 16.(월요일) ~ 4. 14.(화요일) 18:00까지
접수 기간	2026. 3. 23.(월요일) ~ 4. 14.(화요일) 18:00까지 *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(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)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

-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 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 및 검토·승인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가능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, 재공고에도 불구하고,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
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 - ※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,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
-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필수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
-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최초 공고일('26. 3. 16.) 기준임
 - 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
 - ※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: [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\(https://www.iris.go.kr\)](https://www.iris.go.kr)
→ 알림/고객 → 자료실 → IRIS 사용 매뉴얼 '접수매뉴얼'다운로드

6. 선정방법 및 절차

□ 추진근거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공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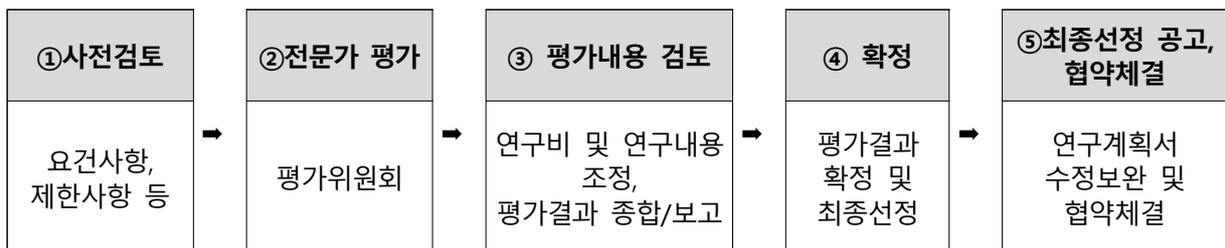
□ 평가 기본방향

-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
-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선정
-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
-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(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)

□ 평가 방법

- 발표 혹은 서면 평가 실시(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)
- ※ 외부 요인에 따라 '비대면 온라인평가'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(세부 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)

□ 평가 절차



① 사전검토

-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, 과제와의 유사·중복성 등 검토

② 전문가 평가

- 평가방법 :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
 - ※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(필요시)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
 - ※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
③ 평가내용 검토

- 전문가 평가 결과, 예산사정,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(안)을 수립
- 복수 응모의 경우,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-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

④ 우주항공청 확정

- 선정(안)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, 공정성, 연구비 대비 적정성, 정책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 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 과제를 최종 확정

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

-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
-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

□ 평가 지표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연구수행 전략 및 계획 (25)	○ 지원 분야 연구전략의 창의성, 타당성, 우수성	15
	○ 지원 분야 연구계획의 적절성, 충실성	10
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(25)	○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, 충실성	10
	○ 교육과정 운영방안의 적절성	10
	○ 전문인력 취업, 창업 등 연계 방법 적절성	5
사업수행 능력 (25)	○ 센터 운영 의지 및 전담팀 구성의 우수성	10
	○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전문성 및 역량	10
	○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	5
사업추진체계 (15)	○ 전략목표의 적합성	10
	○ 추진체계의 우수성	5
성과관리 및 기대효과 (10)	○ 기대효과의 우수성 및 적절성	5
	○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우수성	5
총계		100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(연구수행 전략 및 계획(25점) →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(25점) → 사업수행능력(25점) → 사업추진체계(15점) → 성과관리 및 기대효과(10))

7. 기타사항

- 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의함
 - ※ 관련 규정 조회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,
법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
- 향후 소관 부처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
-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

-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

-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, 연구개발비 증·감액을 할 수 있음

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③항

-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

<참고>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

※ 위탁정산수수료 = 표준수수료 + 가산금

(단위 : 천원)

연구비 규모 * 당해연도 정부출연금	표준수수료(부가세 포함) '26.1.1.~'26.12.31.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	비고								
1억원 미만	987	* (가산금)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-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○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								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185									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515									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1,647									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1,845									
30억원 이상	2,043									
			○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동연구 기관수</th> <th>가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개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1개</td> <td>표준수수료의 10%</td> </tr> <tr> <td>2개 이상</td> <td>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동연구 기관수	가산금	0개	없음	1개	표준수수료의 10%	2개 이상	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
공동연구 기관수	가산금									
0개	없음									
1개	표준수수료의 10%									
2개 이상	누적으로 계상하되,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% 추가계상 (산식: 표준수수료의 10% + (N-1)×5%)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구 개발기간</th> <th>가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년 이하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1년 초과</td> <td>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구 개발기간	가산금	1년 이하	없음	1년 초과	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		
연구 개발기간	가산금									
1년 이하	없음									
1년 초과	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%씩 가산 *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									

- 본 사업(과제)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및 관리함

8. 향후 일정

일정	내용
2026. 3. 23.(월) ~ 4. 14.(화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6. 4월 중	평가 실시(발표 또는 서면)
2026. 4월 중	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
2026. 4월 중	협약 체결

※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9. 문 의 처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우주항공청 (<https://www.kasa.go.kr>) → 알림 → 사업공고

□ 문의처

- 문의사항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

	과제제안요구서 등		과제접수/ 평가/절차 등	전산등록/ 사업관리시스템(IRIS)
문의처	인력양성	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☎ 055-856-4234 ym0527@korea.kr	임무지원단 (☎ 055-856-5017) kasarnd@korea.kr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(☎ 1877-2041)
	연구개발	우주과학탐사 임무보증프로그램 ☎ 055-856-5331 jkang1008@korea.kr		

- 대표 이메일 : kasarnd@korea.kr

붙임 1. RFP

별첨 1. 연구개발계획서(양식)

2. 기타증빙(양식)